

「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
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
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9일
국토교통부장관

「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토지와 그 토지의
정착물의 매수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하도록
「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34222호, 2024. 2. 13., 일부
개정)됨에 따라, 국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을 직할 관리재산
으로 관리하도록 정비하고,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무원의
직위(재산관리관 등) 및 국유재산 관리·처분 등 위임사무를 규정하며,
그 밖에 인용 법령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」에 따라 매수된 토지를 직할 관리재산으로
관리(안 제2조제1항제4호)

- 나. 재산관리관에 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제4항, 제5조)
- 다. 소관 국유재산의 위임사무 범위 구체화 등(안 제6조)
- 라. 한국도로공사 위탁사무 관리·감독 부서 조정(제7조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운영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※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,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
(정부세종청사 6동 5층, 우편번호 30103)
전화 : 044-201-3183 팩스 : 044-201-5512